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977 판결 [건물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24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순향

별지